

『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18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2000. 01. 28.에 근거 법령인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이 폐지되고, 1998. 06. 30.에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, 존치 이유가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타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- 본 「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」은 구미시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,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1998. 06. 30. 완공되고, 근거 법령인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이 2000. 01. 28. 폐지되어,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